

의안번호	2201770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 계 번호	24E2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076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1조 5,334억원(연평균 3,0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6 신설)	-3,076	-3,076	-3,076	-3,076	-3,076	-15,334	-3,07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6 (혼인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300만원 세액공제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에 시행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혼인 신고한 경우부터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신고·납부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세수효과 발생
-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활용하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로 한정
 -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추계기간 동안 혼인건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2021~2023년) 혼인건수의 평균치가 유지된다고 전제
- 부부의 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여부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순 근로소득자 부부에 대한 근로소득세수 감소 규모 및 종합소득자 부부에 대한 종합소득세수 감소 규모를 구분하여 추계
 - 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자로 구분
- 2022년 귀속소득 신고 당시 ① 순 근로소득자 비율[=순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¹⁾] 및 종합소득자 비율[=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②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성별 비율, ③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인원 비율 및 결정세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귀속소득 신고 당시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인원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합산 시 중복자 제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방법

- (혼인건수 추계) 추계기간 동안 혼인건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 혼인건수의 평균치(약 19만 2,600건)가 유지된다고 전제

[표 2] 최근 3년간 혼인건수 현황: 2021~2023년

(단위: 천건)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192.5	191.7	193.7	192.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3] 혼인건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천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192.6	192.6	192.6	192.6	192.6

- (혼인자 수 도출) 추계기간 동안 2022년 귀속소득 신고 당시 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혼인건수를 안분하고,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성별 비율을 반영하여 혼인자 수 도출
 -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는 각각 20,539,614명과 10,275,113명이며, 이 중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신고한 자는 4,535,084명임
 - 2022년 기준 순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자 제외)와 종합소득자의 비율은 각각 60.9%, 39.1%로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2025~2029년의 혼인건수 추계치를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

[표 4] 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혼인건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천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순 근로소득자	117.3	117.3	117.3	117.3	117.3
종합소득자	75.3	75.3	75.3	75.3	75.3

- 부부의 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여부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2022년 귀속소득 신고 당시 성별 비율(근로소득자 중 여성/남성 비율 62.8%, 종합소득자 중 여성/남성 비율 76.8%²⁾)을 반영하여 혼인자 수 산출
 - 성·연령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중복자 현황자료는 확보가 불가하여 성별 비율은 중복자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

[표 5] 혼인자 중 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추계: 2025~2029년

(단위: 천명)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순 근로소득자	191.0	191.0	191.0	191.0	191.0
종합소득자	133.2	133.2	133.2	133.2	133.2

- (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구간별 인원 비율 및 세액공제액 도출) 2022 귀속연도 기준 순 근로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총급여 구간별 인원 및 전체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총급여 구간별 인원 비율, 1인당 결정세액 및 세액공제액 산출
 -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혼인자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과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중 최소값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국세통계연보는 총급여액 구간을 8천만원 이하와 1억원 이하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8,800만원 이하 구간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정세액은 구간 내 평균 수준으로 동일하고, 인원은 소득금액별로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전제

2) 자연인이 아닌 단체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

[표 6] 2022년 귀속 총급여 구간별 순 근로소득자 인원 비율 및 평균 결정세액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과세소득) 규모	인원		1인당 평균 결정세액(A)	1인당 세액공제 한도(B)	1인당 세액공제액 (C=min(A, B))
	수	비율			
1.5천만 이하	115,127	1.1%	0.0	3.0	0.0
2천만 이하	514,114	4.8%	0.1	3.0	0.1
3천만 이하	2,040,755	19.2%	0.2	3.0	0.2
4천만 이하	1,807,314	17.0%	0.6	3.0	0.6
4.5천만 이하	801,478	7.5%	1.1	3.0	1.1
5천만 이하	714,948	6.7%	1.5	3.0	1.5
6천만 이하	1,178,753	11.1%	2.2	3.0	2.2
8천만 이하	1,541,935	14.5%	3.8	3.0	3.0
8.8천만 이하	361,664	3.4%	7.2	3.0	3.0
1억 이하	542,495	5.1%	7.2	—	—
2억 이하	921,637	8.7%	17.4	—	—
3억 이하	72,039	0.7%	53.2	—	—
5억 이하	23,901	0.2%	102.3	—	—
10억 이하	7,460	0.1%	213.3	—	—
10억 초과	1,551	0.0%	804.9	—	—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4-2-4)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순 근로소득자에 대한 총 세수효과 산출) 총급여 구간별 혼인자 수를 도출하고, 이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구간별 순 근로소득자 인원 비율 및 평균 결정세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연도별 혼인자 수 중 순 근로소득자 전망치를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
- 총 세수효과 = 총급여 구간별 혼인자 수 × 1인당 세액공제액

[표 7] 연도별 순 근로소득자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

(단위: 천명, 억원)

귀속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1.5천만 이하	2	0.2	2	0.2	2	0.2	2	0.2	2	0.2
2천만 이하	9	6.0	9	6.0	9	6.0	9	6.0	9	6.0
3천만 이하	37	73.0	37	73.0	37	73.0	37	73.0	37	73.0
4천만 이하	32	194.8	32	194.8	32	194.8	32	194.8	32	194.8
4.5천만 이하	14	159.7	14	159.7	14	159.7	14	159.7	14	159.7
5천만 이하	13	194.3	13	194.3	13	194.3	13	194.3	13	194.3
6천만 이하	21	465.4	21	465.4	21	465.4	21	465.4	21	465.4
8천만 이하	28	830.0	28	830.0	28	830.0	28	830.0	28	830.0
8.8천만 이하	6	194.7	6	194.7	6	194.7	6	194.7	6	194.7
1억 이하	10	—	10	—	10	—	10	—	10	—
2억 이하	17	—	17	—	17	—	17	—	17	—
3억 이하	1	—	1	—	1	—	1	—	1	—
5억 이하	0	—	0	—	0	—	0	—	0	—
10억 이하	0	—	0	—	0	—	0	—	0	—
10억 초과	0	—	0	—	0	—	0	—	0	—
합계	191	1,923	191	1,923	191	1,923	191	1,923	191	1,923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4-2-4)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비율 및 세액공제액 도출) 2022 귀속연도 기준 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비율, 1인당 결정세액 및 세액공제액 산출

-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혼인자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과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중 최소값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국세통계연보는 종합소득금액 구간을 6천만원 이하와 8천만원 이하 구간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7,300만원 이하 구간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정세액은 구간 내 평균 수준으로 동일하고, 인원은 소득금액별로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전제

[표 8]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구간별 과세소득 신고 인원 비율 및 평균 결정세액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 규모	인원		1인당 평균 결정세액(A)	1인당 세액공제 한도(B)	1인당 세액공제액 (C=min(A, B))
	수	비율			
1천만 이하	1,892,513	24.8	0.1	3.0	0.1
2천만 이하	1,989,729	26.1	0.4	3.0	0.4
3.5천만 이하	1,615,048	21.2	1.2	3.0	1.2
4천만 이하	304,061	4.0	2.3	3.0	2.3
5천만 이하	425,214	5.6	3.1	3.0	3.0
6천만 이하	293,687	3.8	4.4	3.0	3.0
7.3천만 이하	238,685	3.1	6.8	3.0	3.0
8천만 이하	128,523	1.7	6.8	—	—
1억 이하	214,350	2.8	10.8	—	—
2억 이하	353,117	4.6	23.3	—	—
3억 이하	84,192	1.1	56.3	—	—
5억 이하	53,814	0.7	101.9	—	—
7억 이하	18,298	0.2	175.4	—	—
10억 이하	11,249	0.1	263.3	—	—
10억 초과	13,530	0.2	931.5	—	—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현황Ⅱ'을 바탕으로 작성

□ (종합소득자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 산출) 종합소득 구간별 혼인자 수를 도출하고, 이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종합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자 인원 비율 및 평균 결정 세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연도별 혼인자 수 중 종합소득자 전망치를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
- 총 세수효과 = 종합소득 구간별 혼인자 수 × 1인당 세액공제액

[표 9] 연도별 종합소득자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

(단위: 천명, 억원)

귀속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혼인자 수	세액 공제액
1천만 이하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2천만 이하	35	137	35	137	35	137	35	137	35	137
3.5천만 이하	28	338	28	338	28	338	28	338	28	338
4천만 이하	5	121	5	121	5	121	5	121	5	121
5천만 이하	7	222	7	222	7	222	7	222	7	222
6천만 이하	5	154	5	154	5	154	5	154	5	154
7.3천만 이하	4	125	4	125	4	125	4	125	4	125
8천만 이하	2	—	2	—	2	—	2	—	2	—
1억 이하	4	—	4	—	4	—	4	—	4	—
2억 이하	6	—	6	—	6	—	6	—	6	—
3억 이하	1	—	1	—	1	—	1	—	1	—
5억 이하	1	—	1	—	1	—	1	—	1	—
7억 이하	0	—	0	—	0	—	0	—	0	—
10억 이하	0	—	0	—	0	—	0	—	0	—
10억 초과	0	—	0	—	0	—	0	—	0	—
합계	133	1,143	133	1,143	133	1,143	133	1,143	133	1,143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현황Ⅱ'을 바탕으로 작성

나. 추계결과

- (재정수입 변화) 혼인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세수는 2026년 3,076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1조 5,334억원(연평균 3,0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5~2029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2026~2030년에 세수효과 발생(징수기준)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6 신설)	-3,076	-3,076	-3,076	-3,076	-3,076	-15,334	-3,076
근로소득세	-1,923	-1,923	-1,923	-1,923	-1,923	-9,617	-1,923
종합소득세	-1,143	-1,143	-1,143	-1,143	-1,143	-5,717	-1,14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어수진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어수진	02-6788-4745	sjeo1993@assembly.go.kr